성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15년 10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건축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 개정사항 및 관련법 조항을 우리군 건축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정비 및 규제개혁에 따른 관련조항을 일부 완화하여 건축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용의 완화 기준 신설(안 제3조제4항 및 제5항)

○ 방재지구나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 경우
- 건폐율을 100분의 140이하로 완화

○ 공동주택에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용적률은 주민공동시설 면적을 가산한 용적률로 완화 적용

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안 제22조제2항제2호 개정)

○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시 현장조사·검사업무대행 시 성주군지역에 등록한 건축사 중 허가권자가 지정한자로 함.

다.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수수료(안 제23조 및 별표3)

○ 대행수수료 지급 시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에 의거 지급

○ 허가 시 수수료 100분의 30(십분율에서 백분율로 변경)

○ 준공 시 수수료 100분의 70(십분율에서 백분율로 변경)

○ 지급시기 : 현장조사완료 분기의 다음달 15일 이내 신청 다음달 15일내지급

라. 맞벽 건축과 연결복도(안 제31조 1항 1호 개정)

○ 상업, 주거지역내 맞벽 또는 연결 복도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20미터 이상도로에 접한 대지에서 12미터 이상도로에 접한 대지로 변경

마.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안 제33조 개정)

○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에서 일조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대한 예외규정이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단서 조항 삭제

바. 부칙조항에 제23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 수수료) 사항은 공포 1년 후 시행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건축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기　　타

(1) 입법예고 : 의견없음.(2015. 9. 17. ~ 10. 6.)

(2) 규제심사 : 의견없음.

(3) 성별영향평가분석 : 원안 동의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완화하는 비율은 100분의 140이하로 한다.

⑤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한다.

제22조제2항제2호 중 “고령·성주지역건축사회(이하 ″건축사회″라 한다)에 등록한 자 중 건축사회에서”를 “성주군지역에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자 중 허가권자가”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다음”을 “별표3에서 정하는 산식에 의거 다음”으로, “수수료”를 “대행수수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업무대행자에게는 별표3에 의한 대행수수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대행수수료를 지급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제20조에 따른 허가수수료의 10분의 7(단, 임시사용승인일 경우 10분의 2,”를 “별표3에 의한 대행수수료의 100분의 70(단, 임시사용승인일 경우 100분의 20,”로, “10분의 5)”를 “100분의 50)”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5일까지”를 “15일까지 별지5 서식에 의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10일”을 “15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과 관련하여 고령·성주 지역건축사회의 내부 규정 제·개정시 군수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31조제1항제1호 중 “20미터”를 “12미터”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6조 제2항”을 “제86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86조제2항 단서의”를 “제86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3 및 별지 제5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1.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영 제5조에 따라 건축심의를 신청한 경우
3.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6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결정고시(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 한다)가 있는 경우. 다만,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건축 기준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별표 3】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제23조 관련)

규모(신청 연면적의 합계)	검사대행 소요시간
660제곱미터 미만	4
660제곱미터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	5
2천제곱미터 이상 4천제곱미터 미만	6
4천제곱미터 이상 6천제곱미터 미만	8
6천제곱미터 이상 8천제곱미터 미만	10
8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13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16
3만제곱미터 이상 5만제곱미터 미만	19
5만제곱미터 이상 7만제곱미터 미만	23
7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27
10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	30
2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34
30만제곱미터 이상	38

※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의 기술사 노임단가 적용 (매년 1월 1일 기준, 천원 미만 절사)

- 대행 수수료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의 기술사 노임단가(시간당) × 소요시간 + 직접경비(직접인건비의 10%) +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15%) +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30%) + 부가가치세10% × 현장조사비율

【별지 제5호 서식】

대행 업무 수수료 지급 청구서

<table>
<tr><td rowspan="3">대 행
업 무
수행자</td><td>주 소</td><td colspan="3">(전화번호)</td></tr>
<tr><td>성 명</td><td></td><td>면허
번호</td><td></td></tr>
<tr><td>사무소명</td><td></td><td>등록
번호</td><td></td></tr>
<tr><td colspan="5">성주군 건축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현장조사·검사 확인 업무의 대행 수수료 지급을 아래와 같이 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성주군수 귀하</td></tr>
<tr><td>지 급
계 좌
번 호</td><td colspan="2">은행
계좌번호 :
예 금 주 :</td><td>대조필</td><td>(인)</td></tr>
</table>

신 청 내 역

구분	건축주	위 치	허가 번호	허가 수수료	대행 수수료	비 고
총계						

※ “구분”란에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 표기